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이용우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5078 발의연월일: 2024. 10. 30.

발 의 자:이용우·김태선·정혜경

임미애 · 이학영 · 서영교

김선민 · 신장식 · 박 정

황정아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23명의 노동자가 사망한 아리셀 참사 이후 사업장 위험성평가의 형 식화를 막기 위해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에 대해 정비하는 방안이 논의 됨. 그 중 하나로 위험성평가 인정기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경 우 산재보험료 감면액을 환수받는 방안이 제안된 바 있음.

하지만 현행법은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취소될 경우 산재 보험료 재산정의 대상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사업장 에 국한되어 있고,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 여서는 보험료 환수조치를 하지 않음.

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해 인정이 취소된 사업장에 대하여 보험료 할 인에 대한 환수조치를 실시하며, 연 1회 정기 위험성평가를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인정 종료 후 1년 이내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도 기존의 인정을 취소하고 보험료 환수 조치를 하려는 것임(안 제15 조).

법률 제 호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제8항제2호 본문 중 "인정기간 중"을 "인정기간 중이거나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 1년 이내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9항 중 "제8항제1호에"를 "제8항제1호 및 제2호에"로 하며, 같은 조 제10항 중 "제8항제2호 및 제3호에"를 "제8항제3호에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① ~	제15조(보험료율의 특례) ① ~
⑦ (생 략)	⑦ (현행과 같음)
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산재예방	8
요율을 적용받는 사업이 다음	
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	
경우에는 재해예방활동의 인정	
을 취소하여야 한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재해예방활동의 <u>인정기간 중</u>	2 <u>인정기간 중</u>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2조제2	이거나 인정기간이 종료된 후
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	1년 이내에
경우. 다만, 「산업안전보건	
법」 제5조에 따른 사업주의	
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	
는 재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	
하는 재해는 제외한다.	
3. (생 략)	3. (현행과 같음)
⑨ 제8항제1호에 따라 재해예	⑨ 제8항제1호 및 제2호에
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	
의 경우에는 산재예방요율 적	
용을 취소하고, 산재예방요율을	

적용받은 기간에 대한 산재보 험료를 다시 산정하여 부과하 여야 한다.

① 제8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재해예방활동의 인정이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연도 재해예방활동의 인정기간비율에 따라 산재예방요율을 적용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산재보험요율을 산정한다.

① · ② (생 략)

,
⑩ <u>제8항제3호에</u>
①·② (현행과 같음)